

食品營業許可制度 改善方向

申 碩 鈞

〈保社部 食品課長〉

1. 食品製造業의 許可基準 強化

1985年 11月末 現在 食品接客業 및 運搬·販賣業等을 제외한 15,600個의 製造業所가 食品衛生法의 規定에 따라 許可管理되고 있으며 그 數의으로는 過飽和상태이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政府는 食品의 安全性提高와 良質의 食品生產을 유도하기 위해서 現行의 施設基準을 대폭 強化하여 新規 許可를 間接的으로 規制하는 同時に 人的基準 및 品質管理基準을 强化하여 製造業所의 衛生水準等을 向上시키고자 한다.

가. 施設基準

現行 業種別 施設基準에는 製造可能한 最低施設을 基準하여 設定하고 있으나 同施設로서는 衛生의이고 品質이 우수한 製品生產에 多少 미흡하기 때문에 다음 事項에 대하여 그 基準을 强化하고자 한다.

◦ 自動가능한 工程은 全自動化。製造 機械·器具의 材質을 衛生의인 材質로 規定。實驗施設基準 强化

나. 對人基準

食品等의 營業許可是 對物 및 對人許可이나 現在까지는 對物的 許可基準만 食品衛生法으로 規定하고 있으나 現行 食品衛生法을 改正하여 營業者의 基準도 別途로 規定하여 使命感이 있고 衛生觀念이 있는 者만이 食品을 製造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間接的으로 食品衛生水準을 向上시키고자 한다.

◦ 營業者 教育: 食品을 製造하고자 하는 者는 所定機關에서 一定期間동안 食品衛生等에 관

한 教育을 펼한 者로 規定하므로서 使命感과 衛生觀念을 고취。其他: 형사적 처벌을 받았거나 社會的 물의등을 야기한 者등 品行이나思想이 정당하지 못한 者에게 新規許可 禁止。

다. 品質管理

徹底한 品質management를 위하여 食品衛生法을 改正하여 衛生管理人의 職務를 대폭 강화한 바 있고 營業者는 食品衛生管理人을 解任할 경우 許可官廳의 同意를 얻도록 規定하는 方向으로 現行 規定을 改正하고자 한다.

△衛生管理人의 職務: 原料檢査 및 製品의 출하전 檢査, 使用하는 기구, 용기와 포장의 規格基準檢査, 標示基準의 適合與否 檢査, 規格基準等違反製品에 對한 處理。生產 및 品質管理 日誌의 作成, 從業員의 健康管理 및 衛生강습 實施, 其他 食品衛生에 關한 事項。

2. 食品製造營業 및 品目許可指針 作成

食品衛生法施行令의 規定에 의한 22個 製造業種에 대하여 成分配合比率, 製造方法等에 대한 구체적인 内容이 수록된 業種別 許可指針書를 구체적으로 作成하여 關聯公務員 및 製造業者의 편의를 도모하는 同時に 生產製造의 均質性을 確保하고자 한다.

3. 食品製造 品目許可制度 改善

食品衛生法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을 製造하고자 하는 者는 해당業種에 대한 營業許可 및 生產하고자 하는 매品目마다 製造에 관한 許可 및 許可된 事項에 대하여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變更허가를 得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品目許可制度는 그간 수차례 同制度의 존폐에 대한 長短點을 비교 檢討하였으나 現在로써는 同制度를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得보다失이 많아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許可事項變更許可에 대해서는 品質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別途의 制度의 장치를 마련한 후 동제도를 폐지하는 方案으로 檢討하여 民願業務의 便利를 도모하고자 한다.